



의안번호	제 2019 - 19호
보 고 연 월 일	2019. 9. 9. (제9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b>I. 제126차 전체회의</b> .....	<b>1</b>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13명) .....	1
3. 주요 안건 .....	1
<b>I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설정범위 및 유형분류)</b> .....	<b>2</b>
1. 개관 .....	2
2. 관련 법률 .....	3
3. 양형자료조사 결과 .....	4
4.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결과 .....	6
5.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	9
<b>III.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설정범위 및 유형분류)</b> .....	<b>16</b>
1. 개관 .....	16
2. 관련 법률 .....	17
3. 양형자료조사 결과 .....	20
4.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결과 .....	23
5.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	24
<b>IV. 교통범죄 양형기준(적용범위 및 유형분류)</b> .....	<b>31</b>
1. 개관 .....	31
2. 법률 개정 내용 .....	31
3.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결과 .....	33
4.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	35
<b>V. 양형기준 해설 수정 진행사항 보고</b> .....	<b>37</b>
<b>VI. 향후 일정</b> .....	<b>38</b>

---

## 【별첨】

- 김호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 김춘수, 장일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 I](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 최승원,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 정초아,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 김호용,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수정범위 및 유형분류)”
  - 김춘수, 장일희, “교통범죄 양형기준 검토 I](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

# I. 제126차 전체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9. 8. 26.(월) 15:30 ~ 19:1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춘수, 김혜경, 김호용, 김희연, 범현, 장일희, 정초아,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설정 범위/유형 분류) 검토

## I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1. 개관

#### 가. 개념

- 디지털 매체는 디지털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매체를 의미
-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는 속칭 몰카범죄,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음부터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라는 명칭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법적 용어가 아니고, 여기에 포섭될 수 있는 개별 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음
- 잠정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설정 범위가 확정되면 전문위원단에서 이에 맞는 적절한 명칭을 논의하여 보고 예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만 보더라도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범죄도 처벌 대상이어서 '디지털'이라는 용어 사용이 문제됨

#### 나. 특징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움
-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다. 보호법익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피해자가 존재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 원하지 않는 촬영, 촬영물 유포, 음란행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다는 관점에서 소극적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

○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소년정보보호법’으로 약칭)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상 음란물유포죄

- 피해자의 동의나 피해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는 사회적 법익(건전한 성 풍속 보호)에 관한 범죄

## 2. 관련 법률

### 가. 성폭력처벌법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14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5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 전시, 상영/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5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영리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 14 ②항 죄	7년↓ 징역
§ 13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목적으로 통신매체 통하여 음란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2년↓ 징역, 500만 원↓ 벌금

### 나. 청소년정보보호법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11	청소년정보보호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무기징역, 5년↑ 징역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소지, 운반/공연히 전시, 상영	10년↓ 징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공연히 전시, 상영	7년↓ 징역, 5,000만 원↓ 벌금
		음란물 제작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	3년↑ 징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1년↓ 징역, 2,000만 원↓ 벌금

## 다. 정보통신망법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74 ① 2호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	음란한 부호,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 전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 3. 양형자료조사 결과1)

#### 가. 양형자료조사 대상

- 2014. 1. 1.~2018. 12. 31. 제1심 단일 범죄, 피고인 기준 징역형 선고  
총 1,891건

단위: 명, %

디지털 성범죄 유형	수	비율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577	83.4
통신매체 이용 음란	196	10.4
음란물 제작·배포 등	50	2.6
음란물 유포	68	3.6
<b>전체</b>	<b>1,891</b>	<b>100.0</b>

#### 나. 유형별 분포

단위: 명, %

범죄유형			선고연도							전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카메라등 이용촬영	촬영	수	-	-	171	260	345	386	396	1,558
		비율	-	-	11.0	16.7	22.1	24.8	25.4	100.0
	유포	수	-	-	1	1	5	8	4	19
		비율	-	-	5.3	5.3	26.3	42.1	21.1	100.0
	소계	수	-	-	<b>172</b>	<b>261</b>	<b>350</b>	<b>394</b>	<b>400</b>	<b>1,577</b>
		비율	-	-	<b>10.9</b>	<b>16.6</b>	<b>22.2</b>	<b>25.0</b>	<b>25.4</b>	<b>100.0</b>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	-	45	44	36	36	35	196
		비율	-	-	23.0	22.4	18.4	18.4	17.9	100.0
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1항	수	0	1	2	2	3	7	0	15
		비율	0.0	6.7	13.3	13.3	20.0	46.7	0.0	100.0

1) 제7기 양형기준 대상범죄분석 I



단위: 명, %

범죄유형			선고연도						전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2항	수	12	7	1	4	3	3	1	31	
		비율	38.7	22.6	3.2	12.9	9.7	9.7	3.2	100.0
	수	0	0	1	1	1	0	1	4	
		비율	0.0	0.0	25.0	25.0	25.0	0.0	25.0	100.0
	소계	수	12	8	4	7	7	10	2	50
		비율	24.0	16.0	8.0	14.0	14.0	20.0	4.0	100.0
음란물유포	수	-	-	14	6	10	16	22	68	
	비율	-	-	20.6	8.8	14.7	23.5	32.4	100.0	
전체	수	12	8	235	318	403	456	459	1,891	
	비율	0.6	0.4	12.4	16.8	21.3	24.1	24.3	100.0	

#### 다. 선고 내역

단위: 명, %

범죄유형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	수	242	1,316	1,558
		비율	15.5	84.5	100.0
	유포	수	6	13	19
		비율	31.6	68.4	100.0
	소계	수	248	1,329	1,577
		비율	15.7	84.3	100.0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43	153	196
		비율	21.9	78.1	100.0
	소계	수	43	153	196
		비율	21.9	78.1	100.0
음란물 제작·유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1항	수	3	12	15
		비율	20.0	80.0	100.0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2항	수	3	28	31
		비율	9.7	90.3	100.0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3항	수	0	4	4
		비율	0.0	100.0	100.0
	소계	수	6	44	50
		비율	12.0	88.0	100.0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수	9	59	68
		비율	13.2	86.8	100.0

단위: 명, %

	소계	수	9	59	68
		비율	13.2	86.8	100.0
전체		수	306	1,585	1,891
		비율	16.2	83.8	100.0

#### 4.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위반 제 14조 제1항~제3항]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

-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범죄에 해당
- 지난 10년간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11.3배(585건 → 6,615건) 증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8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2%로 증가<sup>2)</sup>
- 최근 강남 유명 클럽 성관계 몰래카메라 사건, 유명 앵커의 지하철 몰래카메라 사건 등으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아짐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1) 요약

#####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포함(다수 의견, 9인)
- 제외(소수 의견, 3인)

##### ②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 유포죄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4항), 정보통신망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제외(다수 의견, 9인)
- 포함(소수 의견, 3인)

2)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15.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범죄통계 원표를 토대로 함.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제외(다수 의견, 11인)
- 포함(소수 의견, 1인)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가) 포함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9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일종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
- 검토 대상 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양형자료조사 대상 1,891건 중 196건)
- 소폭이지만 벌금형 비율이 감소하고 실형/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sup>3)</sup>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짐

(나) 제외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3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스토킹 범죄의 성격이 강함
-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상대적으로 낮고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여 적절한 권고형량 범위를 정하기 어려움
- 실무상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많고, 공소 제기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 비율이 높아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 유포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4항), 정보통신망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3) 김춘수, 장일희 전문위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I)”, 2쪽 하단 통계.

(가) 제외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9인)

-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보호법익 자체가 다름
- 형법상 성폭속에 관한 죄인 음화반포등죄, 음화제조등죄에 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 필요성, 정보통신망이라는 범행수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특별규정임. 추후 기본범죄인 음화반포등죄, 음화제조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그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죄는 사례가 적어 양형기준의 설정 필요성이 높지 않음(양형자료조사 대상 1,891건 중 50건으로 2.6%에 불과)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법정형(1년↓, 1천만 원↓)이 낮아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 비슷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례는 형법상 모욕죄(1년↓, 200만 원↓) 정도에 불과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실무상 약식명령으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징역형 선고 사례가 적어 양형기준 설정이 어려움

(나) 포함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3인)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비하여 법정형이나 평균 형량이 높아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죄도 징역형 선고 사례가 존재하고, 구공판 인원 수도 증가 추세에 있음

(4)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가) 제외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11인)

- 징역형이 선택된 사건 수가 극히 적고, 그 경우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건의 집행유예 선고되었고 실형 선고는 없음)<sup>4)</sup>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낮음

(나) 포함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1인)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배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면, 소지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 5.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 가. 일반론

#### (1) 유형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 (2)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할지 여부

##### (가)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하자는 견해(제1 의견, 7인)

- 디지털 성범죄는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성범죄와는 전혀 다른 형태, 성격의 범죄임. 이러한 관점

4) 김춘수, 장일희 전문위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I)”, 5쪽 각주 1) 참조.

에서 성매매범죄의 경우에도 기존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독립범죄군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음

-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할 경우 대유형4로 구분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대유형을 ① 일반적 기준,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균형법상 성범죄가 추가로 포함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되면 성범죄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기존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양형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급격히 증가하는 범죄발생 건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나) 성범죄군에 포섭하자는 견해(제2 의견, 5인)

-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독립범죄군으로 묶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하여 성범죄군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 양형기준과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까지 별도 설정할 경우 성범죄에 관하여 지나치게 많은 독립범죄군이 존재하게 됨
- 기존의 범죄군에 편입이 가능한 경우 대유형으로 분류하더라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미는 살릴 수 있음

## 나. 구체적 유형 분류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 (1) 요약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별도 대유형<sup>5)</sup> 또는 중유형<sup>6)</sup>으로 분류(별개 양형인자표 사용)할지 여부

㉠ 별도의 대유형(또는 중유형)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양형인자표 사용(다수 의견, 8인)

㉡ 별도 대유형(또는 중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동일한 양형인자표를 사용(소수 의견, 4인)

②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분류 방안

㉠ '촬영과 반포 등'을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다수 의견, 6인)

㉡ '촬영과 반포 등'을 하나의 소유형으로, '영리 목적 반포 등'을 다른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제1 소수 의견, 4인)

㉢ '촬영'을 하나의 소유형으로, '반포 등'을 다른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제2 소수 의견, 2인)

③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4항을 설정대상에 포함할 경우 유형분류 방안

㉠ 구성요건별로 4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

㉡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4인)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별도 대유형 또는 중유형으로 분류할지 여부(별개 양형인자표 사용 여부)

(가) 별도의 대유형(또는 중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성요건과 양형인자 등에서 차이가 있음.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별도의

5) 독립범죄군 양형기준 신설안을 선택할 경우임.

6) 기존의 성범죄 양형기준 포섭안을 선택할 경우임.

대유형(또는 중유형)으로 분류하여 별개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별개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각의 범행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할 수 있음

**■ 다수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1.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나) 별도 대유형(또는 중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동일한 양형인자표를 사용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4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설정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인자를 공유하되,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특유한 양형인자는 양형인자표에서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소수 의견에 따른 유형 분류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카메라등이용촬영			
2	통신매체이용음란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형 분류 방안

(가) ‘촬영과 반포 등’을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영리 목적 반포 등을 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6인)

- 촬영(1항)과 반포 등(2항)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들어맞고, 실무상 양자의 양형 차이가 크지 않아 권고 형량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양자의 양형상 차이를 반영할 수 있음
- 촬영범죄 없이 반포 등 범죄만 저지른 사례가 극히 드물고, 영리목적 범죄는 분석사례 중 1건에 불과하여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실익이 낮음

▣ 다수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1.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반포 등			

7) 피고인이 촬영자가 아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나) ‘촬영과 반포 등’과 ‘영리 목적 반포 등’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제1 소수 의견, 4인)

- 촬영(1항)과 반포 등(2항)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영리 목적 반포 등(3항)을 가중된 법정형으로 규정한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들어맞음

■ 제1 소수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1.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반포 등			
2	영리 목적 반포 등			

(다) ‘촬영’과 ‘반포 등’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영리 목적 반포 등을 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견해(제2 소수 의견, 2인)

-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생성범죄와 유통범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범죄이고, 두 유형은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양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양형자료조사 결과<sup>8)</sup>)에 의하면, 촬영의 평균형량은 7.08월, 유포의 평균형량은 10.32월로 두 유형의 유의미한 양형편차가 나타났음)

■ 제2 소수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1.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2	반포 등			

8) 제7기 양형기준 대상범죄분석 I 13쪽.

(4)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4항을 설정 대상에 포함할  
경우 유형 분류 방안

(가) 4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각각의 행위태양과  
법정형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별로 소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나)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4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물 배포, 제공 등)은 같은 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  
포, 제공 등)의 가중적 구성요건이고, 같은 조 제4항(음란물 제작  
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은 같은 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과 관련됨
-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을 하나의 소유형으로, 제11조 제1항과 제4  
항을 다른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 분류를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함

(5)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설정 대상에 포함할 경우 유  
형 분류 방안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 유포죄와는 별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자는 데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 Ⅲ.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1. 개관

##### 가. 의의

- ‘군형법상 성범죄’는 대한민국 군인을 수범자로 하는 군형법에 그 구성요건과 처벌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를 말함
- 군형법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에 포함된 군인등강간(제92조), 군인등유사강간(제92조의2), 군인등강제추행(제92조의3),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제92조의4), 추행(제92조의6), 군인등강간등상해/치상(제92조의7), 군인등강간등살인/치사(제92조의8), 미수범(제92조의5. 제92조 및 제92조의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한 미수범에 한함)이 이에 해당함

##### 나. 특성

- 범죄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 등을 의미함)인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함. 즉 군형법 적용 대상자인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
- 추행죄는 전형적인 순정군사범에 해당하나 나머지 성범죄는 불순정군사범에 해당함
  - **순정군사범** : 군형법전 이외의 다른 형법법규에 의해서는 죄가 되지 않으나, ① 군사목적상 특별히 죄로 다루어지는 것 즉 군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의무에 대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② 다른 형법법규에 의해서 이미 죄로 되어 있더라도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그 구성요건의 중요한 부분에 변경을 가해서 그 죄의 죄질을 바꾸어서 규정한 범죄 두 가지를 의미함
  - **불순정군사범** : 다른 형법법규상 이미 범죄로 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구성요건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형을 가중함으로써 죄의 실질을 변경함에 이르지 않는 범죄를 의미함

- 추행죄를 제외한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은 주체와 객체가 군인 또는 준군인으로 한정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중하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구성요건이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특별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군형법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이 적용됨<sup>9)</sup>
- 군형법상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4년경 이후에는 군사법원에서 선고하는 사건 중 사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에 해당하고,<sup>10)</sup>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높음

## 2. 관련 법률

### 가.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연혁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84 ①	전지강간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	사형
§ 92	군인등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 <sup>10)</sup> 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	5년 ↑ 유기징역
§ 92의2	군인등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3년 ↑ 유기징역
§ 92의3	군인등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	1년 ↑ 유기징역
§ 92의4	군인등(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 92, § 92의2, § 92의3의 예에 따름
§ 92의5	(§ 92 내지 § 92의4 각 죄명)미수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	위 각 예에 따름

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등 참조.

10) 권상진 전문위원, ‘제7기 양형위 양형기준 설정범죄 대상 검토’(제95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 회의자료) 참조.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92의6	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2년 ↓ 징역
§ 92의7	군인등(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7년 ↑ 징역
§ 92의8	군인등(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 징역

## 나. 균형법

유형	법률 제9820호 이전 (제정~2010. 2. 2.)	법률 제9820호 (2010. 2. 3.~2013. 6. 18.)	법률 제11734호 (2013. 6. 19.~현재)
전지강간	전투·점령지역 강간	변동 없음	객체가 ‘사람’ 으로 변경
군인등강간	규정 없음	신설. 객체가 ‘부녀’	객체가 ‘사람’ 으로 변경
군인등유사강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신설. 객체가 ‘사람’
군인등강제추행	규정 없음	신설	변동 없음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 없음	신설	변동 없음
추행	1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	‘계간’ 을 ‘항문성교’ 로 용어 변경

### 11) 제1조(적용대상자)

-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군인등강간등 상해/치상	규정 없음	신설	변동 없음
군인등강간등 살인/치사	규정 없음	신설	변동 없음

#### 다.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의 비교

유형	형 법	군형법
	법정형	법정형
강간	§ 297	§ 92
	3년 ↑ 유기징역	5년 ↑ 유기징역
유사강간	§ 297조의2	§ 92의2
	2년 ↑ 유기징역	3년 ↑ 유기징역
강제추행	§ 298	§ 92의3
	10년 ↓ 징역, 1,500만 원 ↓ 벌금	1년 ↑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 추행	§ 299	§ 92의4
	§ 297 내지 § 298에 정한 형	§ 92 내지 § 92의3에 정한 형
미수범	§ 300	§ 92의5
	§ 297 내지 § 299에 정한 형	§ 92 내지 § 92의4에 정한 형
추행	규정 없음	§ 92의6
		2년 이하 징역
강간등상해/치상	§ 301	§ 92의7
	무기 또는 5년 ↑ 징역	무기 또는 7년 ↑ 징역
강간등살인/치사	§ 301의2	§ 92의8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무기 또는 10년 ↑ 징역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 징역

### 3. 양형자료조사 결과

#### 가. 통계의 범위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이 실시한 양형자료조사(2019. 7. 8. ~ 2019. 7. 26.)를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함(전역자 등에 대한 일반 법원 선고 사건은 불포함)
- 미확정, 선고유예 사건 등을 제외한 전체 238건의 단일범 또는 동종 경합범 사건을 기준으로 하였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선고된 사건임
  - 동종 경합범은 동일 죄명의 동일 법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미

#### 나. 주요 통계

##### (1) 조사대상사건 연도별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연도							전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군형법위반 (강간)	수	0	1	0	0	1	0	0	2
	비율	0.0	50.0	0.0	0.0	50.0	0.0	0.0	100.0
군형법위반 (유사강간)	수	0	2	1	2	3	1	0	9
	비율	0.0	22.2	11.1	22.2	33.3	11.1	0.0	100.0
군형법위반 (준강간)	수	0	0	0	1	0	1	0	2
	비율	0.0	0.0	0.0	50.0	0.0	50.0	0.0	100.0
군형법위반 (강제추행)	수	2	28	38	41	33	31	6	179
	비율	1.1	15.6	21.2	22.9	18.4	17.3	3.4	100.0
군형법위반 (준강제추행)	수	4	8	8	13	8	3	1	45
	비율	8.9	17.8	17.8	28.9	17.8	6.7	2.2	100.0
군형법위반 (강제추행상해)	수	0	0	0	0	0	1	0	1
	비율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전체	수	6	39	47	57	45	37	7	238
	비율	2.5	16.4	19.7	23.9	18.9	15.5	2.9	100.0

##### (2) 선고내역



단위: 명, %

분류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균형법위반 (강간)	수	2	0	2
	비율	100.0	0.0	100.0
균형법위반 (유사강간)	수	3	6	9
	비율	33.3	66.7	100.0
균형법위반 (준강간)	수	0	2	2
	비율	0.0	100.0	100.0
균형법위반 (강제추행)	수	21	158	179
	비율	11.7	88.3	100.0
균형법위반 (준강제추행)	수	5	40	45
	비율	11.1	88.9	100.0
균형법위반 (강제추행상해)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31	207	238
	비율	13.0	87.0	100.0

### (3) 형량분포

#### (가) 전체

단위: 명, %, 월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9	10	12	18	24	30	36	48	60		
균형법위반 (강간)	수	-	-	-	-	-	-	-	-	-	1	1	2	54.00
	비율	-	-	-	-	-	-	-	-	-	50.0	50.0	100.0	
균형법위반 (유사강간)	수	-	-	-	-	-	2	3	-	4	-	-	9	28.00
	비율	-	-	-	-	-	22.2	33.3	-	44.4	-	-	100.0	
균형법위반 (준강간)	수	-	-	-	-	-	-	-	-	2	-	-	2	36.00
	비율	-	-	-	-	-	-	-	-	100.0	-	-	100.0	
균형법위반 (강제추행)	수	61	22	-	2	63	17	8	2	4	-	-	179	11.28
	비율	34.1	12.3	-	1.1	35.2	9.5	4.5	1.1	2.2	-	-	100.0	
균형법위반 (준강제추행)	수	18	3	1	3	17	2	-	1	-	-	-	45	9.80
	비율	40.0	6.7	2.2	6.7	37.8	4.4	-	2.2	-	-	-	100.0	
균형법위반 (강제추행 상해)	수	-	-	-	-	-	-	-	-	1	-	-	1	36.00
	비율	-	-	-	-	-	-	-	-	100.0	-	-	100.0	
전체	수	79	25	1	5	80	21	11	3	11	1	1	238	12.31
	비율	33.2	10.5	0.4	2.1	33.6	8.8	4.6	1.3	4.6	0.4	0.4	100.0	

(나) 실행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2	18	24	36	48	60		
균형법위반 (강간)	수	-	-	-	-	-	-	1	1	2	54.00
	비율	-	-	-	-	-	-	50.0	50.0	100.0	
균형법위반 (유사강간)	수	-	-	-	2	-	1	-	-	3	24.00
	비율	-	-	-	66.7	-	33.3	-	-	100.0	
균형법위반 (강제추행)	수	8	1	8	3	1	-	-	-	21	10.95
	비율	38.1	4.8	38.1	14.3	4.8	-	-	-	100.0	
균형법위반 (준강제추행)	수	3	-	2	-	-	-	-	-	5	8.40
	비율	60.0	-	40.0	-	-	-	-	-	100.0	
전체	수	11	1	10	5	1	1	1	1	31	14.58
	비율	35.5	3.2	32.3	16.1	3.2	3.2	3.2	3.2	100.0	

(다) 집행유예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9	10	12	18	24	30	36		
균형법위반 (유사강간)	수	-	-	-	-	-	-	3	-	3	6	30.00
	비율	-	-	-	-	-	-	50.0	-	50.0	100.0	
균형법위반 (준강간)	수	-	-	-	-	-	-	-	-	2	2	36.00
	비율	-	-	-	-	-	-	-	-	100.0	100.0	
균형법위반 (강제추행)	수	53	21	-	2	55	14	7	2	4	158	11.33
	비율	33.5	13.3	-	1.3	34.8	8.9	4.4	1.3	2.5	100.0	
균형법위반 (준강제추행)	수	15	3	1	3	15	2	-	1	-	40	9.98
	비율	37.5	7.5	2.5	7.5	37.5	5.0	-	2.5	-	100.0	
균형법위반 (강제추행 상해)	수	-	-	-	-	-	-	-	-	1	1	36.00
	비율	-	-	-	-	-	-	-	-	100.0	100.0	
전체	수	68	24	1	5	70	16	10	3	10	207	11.97
	비율	32.9	11.6	0.5	2.4	33.8	7.7	4.8	1.4	4.8	100.0	

#### 4.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 의견 일치

#####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

- 균형법 제92조(군인등강간), 제92조의2(군인등유사강간), 제92조의4(군인등준강간), 균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 제92조의4(군인등준강제추행), 균형법 제92조의7(상해/치상), 제92조의8(치사)

##### 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

###### (1) 균형법 제84조 제1항(전지강간)

- 균형법상 '약탈의 죄'장에 편입되어 있고, 그 성격이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법정형이 사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양형기준을 설정할 여지가 없음

###### (2) 균형법 제92조의6(추행)

-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이유로 위헌 논의(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헌법재판소에서 3차례 합헌결정을 하였으나[2002년, 2011년, 2016년(5:4 합헌)] 현재에도 헌법재판소에 4건(위헌법률심판제청 1건, 위헌소원 3건)의 관련 사건이 계속 중임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군대 내의 동성 간 성적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미국과 유럽 다수 국가에서 전역조치 등 행정처분도 허용되지 않음)
-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양형편차 발생의 여지가 적고 2018년 기준으로 사건 수가 7건에 불과하여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3) 균형법 제92조의8(군인등강간살인)

- 기존 양형기준 체계에 의하면, 고의의 결합범인 강간 등 살인은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4 유형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형에 포함되어 있음<sup>12)</sup>
- 균형법상 군인등강간살인죄 역시 향후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통하여 살인범죄군에 포함시키면 되므로,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균형법상 군인등강간살인죄를 반영하기 위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나뉨
    - ① 발생빈도가 극히 낮아(군사법원 자체 통계상 전무함) 양형기준 수정이 시급하지 않으므로 추후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때 반영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
    - ②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수정대상 양형기준에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추가하여 이 부분에 한하여 수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소수 의견, 4인)

## 5.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 가.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할지 여부

- 균형법상 성범죄를 독립범죄군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하자는 데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 나. 성범죄 양형기준에 편입할 경우 유형분류 방안

- (1) 성범죄 양형기준의 중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sup>13)</sup>

12)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형의 정의는 '2018 양형기준' 책자의 4쪽 참조.

13) 다만 균형법상 강간등치사의 경우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 별도로 유형분류를 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유형의 정의 부분의 적용법조에 '균형법 제92조

-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① 일반적 기준,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대유형을 분류한 후 피해자를 기준으로 13세 이상, 장애인, 13세 미만 등으로 중유형을 분류함. 균형법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 성범죄와 피해자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중유형의 하나로 반영하게 되면 기존 양형기준의 체계와 자연스럽게 들어맞게 됨
- 균형법상 성범죄가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성범죄와의 통일적인 비교, 분석도 용이함
- 현재 대유형1인 '일반적 기준'에 1개의 양형인자표만 추가하면 되므로 양형기준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중복되지 않음

**▣ 다수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3. 성범죄 양형기준

01<sup>1</sup>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sup>1</sup>의8'을 추가하는 방안임.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마.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	군인등유사강간			
3	군인등강간			

02<sup>1</sup>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다.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	군인등유사강간			
3	군인등강간			

03<sup>1</sup>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변동 없음]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2) 성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제1 소수 의견, 3인)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입장에서 보다 더 쉽게 양형기준에 접근할 수 있음
- 기존 성범죄와 독립된 별개의 양형인자표를 만들어 균형법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음

☐ 제1 소수 의견에 의한 유형분류안<sup>14)</sup>

01<sup>1</sup> 일반적 기준

현행과 동일

## 02<sup>1</sup>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현행과 동일

## 03<sup>1</sup>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현행과 동일

## 04<sup>1</sup> 균형법상 성범죄 [신설]

가. 군인등(유사)강간죄/상해결과 발생/사망결과 발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유사강간			
2	군인등강간			
3	군인등(유사)강간상해/치상			
4	군인등(유사)강간치사			

나. 군인등강제추행죄/상해결과 발생/사망결과 발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	군인등강제추행상해/치상			
3	군인등강제추행치사			

### (3) 성범죄 양형기준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제2 소수 의견, 1인)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균형법상 성범죄의 고유한 양형인자만 반영하면 됨
- 균형법상 성범죄의 기본범죄인 형법상 성범죄와 형량범위의 비교·분석이 용이함

14)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 체계에 맞추어 ① 일반적 기준,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균형법상 성범죄의 중유형을 구분하는 방안도 상정 가능함.



■ 제2 소수 의견에 의한 유형분류안

01<sup>1</sup>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b>균형법상 강간</b>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4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균형법상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감경 하도록 함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b>균형법상 강제추행</b>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4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현행과 같음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현행과 같음

## 02<sup>1</sup>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b>균형법상 강제추행</b>			
3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b>균형법상 강간</b>			
5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6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7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8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균형법상 유사강간은 4유형에 포함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현행과 같음

## 03<sup>1</sup>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변동 없음]**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IV. 교통범죄 양형기준(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 1. 개관

- 현행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2012. 6. 18. 의결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되었고, 2016. 3. 28. 수정을 거쳐 2016. 5. 15.부터 수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음
- 그 후 ①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약칭) 제5조의11이 2018. 12. 18. 개정·시행(이른바 ‘윤창호법’)되면서 법정형이 높아졌고, ②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 개정(2019. 6. 25. 시행)되면서 ㉠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고(중전 3회 이상), ㉡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되면서(중전 혈중알콜농도 0.05%) 법정형도 높아짐

### 2. 법률 개정 내용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개정 2018. 12. 18.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개정 2018. 12. 24.(2019. 6. 25.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

<p>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p> <p>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p> <p>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p>2.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p> <p>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p>	<p>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p>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p>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p>
--	---

○ 법정형 정리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비고
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전문	10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법정형 변경
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후문	1년 이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	법정형 변경
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치상 후 유기도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3년 이상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치사 후 유기도주 또는 도주 후 유기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0.03~0.0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변경
0.08~0.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변경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비고
0.2%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법정형 변경
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변경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법정형 변경

### 3.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특정범죄가중범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범 제5조의 11]를 양형기준 수정 대상에 포함

- 2018. 12. 18. 법 개정으로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할 필요 있음
- 기존에 처벌대상이 되었던 범죄이고 양형 사례도 어느 정도 축척 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양형기준 수정 대상에 포함 여부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제3항 제2호(0.2% 이상), 제2항(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7인)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음주운전(단일범) 초범의 경우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종결 처리되고 구공판되더라도 벌금형 선고 비율이 높아 형종 선택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포함하기 어려움.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는 2회 이상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혈중알콜농도 수치

가 높은 0.2% 이상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경우 징역형 선고사례가 상당히 존재하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법정형이 세밀하게 규정된 0.2% 미만 음주운전범죄와 달리 나머지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법정형의 폭이 상당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필요성이 인정됨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부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보다 법정형이 높아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혀 설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전부를 양형기준 수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견해(제1 소수의견, 4인)**

-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의 선고비율이 높고, 형종 선택의 기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은 보다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도로교통법 148조의 2의 개정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나, 개정법이 2019. 6. 25.부터 시행되어 상향된 법정형에 따른 적용 사례가 거의 없음. 특히 0.03~0.05% 음주운전의 경우 종래 처벌되지 않던 음주운전 유형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참고할 과거 양형사례가 전무함
- 0.03~0.08%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이고, 0.08~0.2%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법정형 구간이 매우

세밀하여 사실상 법정형이 양형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차별되는 권고 형량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개정법의 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음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전부를 양형기준 수정 대상에 포함하자는 견해(제2 소수 의견, 1인)

- 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사례가 상당하고, 선고형량도 상향되는 추세
- 2019. 6. 25.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이 변경되고 법정형이 강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법 개정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유형 전부를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4.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 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유형 분류 방안

(1) 별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치상과 치사로 유형 분류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10인)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치사상과 법정형의 차이가 커짐.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
- 양형자료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일반 교통사고 유형 전체의 평균형량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개정 후 위험운전치사상 범죄 평균형량 사이의 차이(치상의 경우 7.91월 vs. 9.83월, 치사의 경우 9.63월 vs. 29.82월),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개정 전 후의 평균형량 차이(치상의 경우 8.89월 vs. 9.83월, 치사의 경

우 22.53월 vs. 29.82월)가 뚜렷하게 나타남

■ 다수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19. 교통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2	교통사고 치사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2	위험운전 치사			

03.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2	치상 후 유기 도주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2) 기존 ‘일반 교통사고’ 유형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2인)

-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의 행위태양에 속하므로 대유형 분류 단계에서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실익은 크지 않음. 대유형1인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포함시키되 소유형을 세분하는 것이 타당함

■ 소수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19. 교통범죄 양형기준

01.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2	교통사고 치사			
3	음주교통사고 치상			
4	음주교통사고 치사			

0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2	치상 후 유기 도주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적용범위에 포함할 경우 유형분류 방안

- 음주운전을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 다만 음주운전을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그 소유형 분류 방안은 아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추후 논의를 거쳐 보고 예정

## V. 양형기준 해설 수정 진행사항 보고

- 2019. 6. 10. 제95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해설」을 수정하기로 의결
-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운영방침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반을 구성함
  - 연구반원 : 수석전문위원, 김혜경, 김호용, 장일희,<sup>15)</sup> 한상규 전문위원

15) 인사이동으로 차호동 전문위원에서 장일희 전문위원으로 변경됨.

- 간사 : 운영지원단장
- 2019. 7. 15. 열린 1차 회의에서 양형기준 해설 수정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집필 분담안을 확정
- 2019. 8. 19. 열린 2차 회의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집행유예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차 수정 초고에 대하여 논의 진행

## **VI. 향후 일정**

### **1. 전문위원 전체회의**

-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수정방안(형량범위) 및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일시 : 2019. 9. 30.(월) 15:30~

### **2.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 양형기준 해설 제2차 수정 초고 검토
- 일시 : 2019. 10. 7.(월) 16:00~